

채점관 준수사항(제10조 관련)

1. 채점관으로 지정받은 자는 자기가 채점관임을 타인에게 고지하여서는 안 된다.
2. 채점은 모범답안에 의거 적색 필기구로 채점하여야 하며, 별지 제7호서식 전면의 객관식 답란은 컴퓨터 리드기로 채점하여야 한다.
3. 채점은 오답만을 가려 사선으로 표시한다.
4. 채점이 완료되면 인재개발과장에게 모범답안과 채점답안을 즉시 인계하여야 한다.
5. 채점 후 누구에게도 득점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